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김영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문화재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화재예방을 위하여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
-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수를 제한 하였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능동적인 문화재 보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에서 “역사문화환경”신설 (안 제2조)
-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기능 중 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” 삭제 (안 제4조)

- 충청북도 문화재분과위원회 구성을 기존 3개 분과위원회 규정을 삭제 (안 제11조)
- 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19조의 2)
- 문구 및 자구 수정
 - ※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→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, 특정인의 재산상의 → 특정인에게 재산상의, 자유의 침해 → 자유에 대한 침해,

4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는 현재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, 분과별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.
 - 1분과 : 유형 및 민속자료 중 건조물, 사적, 기념물, 명승 등
 - 2분과 : 유형문화재 중 전적, 서적, 고문서, 조각, 회화, 공예품 등
 - 3분과 : 무형문화재, 민속자료(생활) 등
- 역사문화환경 등 문화유산 관련 내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례로 문화재 분과위원회의 개수를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, 집행부서가 능동적으로 문화재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